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01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이훈기・김정호・김문수

박선원 • 박지원 • 김영배

김용만 • 노종면 • 이정문

허종식 • 박민규 • 이정헌

정을호 · 조인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 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 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 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 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심의 등 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아울러 기존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18조제1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과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⑨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 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 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나 다른 주주의 감자 (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다른 주 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 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가 된 날 이후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 ④ (생	주식소유 제한)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5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	
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	
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현재 <u>제10조</u>	1제10조
<u>제6항</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7항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통신사업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

⑤ ~ ⑦ (생 략)

<신 설>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라 국	가안전보?	장, 공공의	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 공공의	이익의
보호와	관련하	여 필요	한 조건
을 붙었	일 수 있다	<u> </u>	

-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 ⑨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제32 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 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 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 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 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하 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세13조(이행강제금)	(1)
	- <u>제10조제6항</u> -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한다.

② ~ ④ (생 략)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 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 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

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 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u>되려는 자</u>

5. · 6. (생략)

② ~ ① (생 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0조제5항</u>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1. ~ 3. (현행과 같음)
4
<u>되려는 자나 다</u>
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다른 주주
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최대주
주가 된 자의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주주가 된 날 이후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
<u>다.]</u>
5.・6.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97조(벌칙)
<u>.</u>
1. <u>제10조제6항</u>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 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 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3 -3 -3 -3 -4)
2. ~ 7. (현행과 같음)
4. 1. (1234) (127)